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3. 김경이 의원 외 11인 (의안번호 411호)
나. 회부일자: 2025. 2.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2.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이 의원)

가. 제안이유

-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활용 등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등으로 불편함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추진사업과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홍보(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등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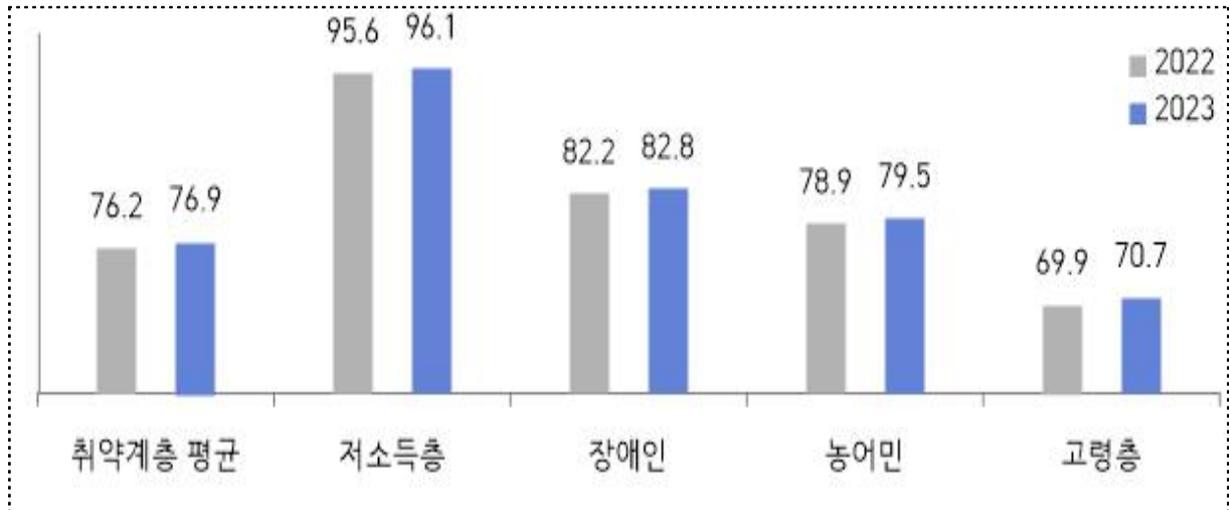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82.8%로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 100%에 비하여 취약함

<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수준 >



※ 2023년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6.9%로 2022년 76.2% 대비 0.7%p 상승

※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자료출처 : 2023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

○ 안 제5조(실태조사), 안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추진사업)

- 장애인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사업, 지능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사무 위탁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등의 불편함 없이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를 제고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조례제정의 취지나 내용이 적절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46조 및 제50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3. (생략)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화 관련법 외의 관계 법령(별첨1)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1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해숙

1. 제안이유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활용 등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등으로 불편함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라. 추진사업과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홍보(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3. 양순임 의원 외 15인 (의안번호 412호)
- 나. 회부일자: 2025. 2.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2.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한국수어의 날,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제안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농인 편의증진(안 제4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안 제6조)
- 한국수어의 날(안 제7조)
-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을 반영하여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한국수화언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북구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

(2024. 12월 기준)

연번	장애유형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계	16,901	5,877(35%)	11,024(65%)
1	지체	7,095	1,216	5,879
2	시각	1,844	376	1,468
3	청각	2,681(15.8%)	439	2,242
4	언어	162	90	72
5	지적	1,182	1,182	0
6	뇌병변	1,651	870	781
7	자폐성	344	344	0
8	정신	606	588	18
9	신장	873	641	232
10	심장	33	21	12
11	호흡기	89	75	14
12	간	132	3	129
13	안면	17	6	11
14	장루·요루	147	11	136
15	뇌전증	45	15	30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제명을 현 조례상 용어인 “통역”에서 “문화”로 변경하여 통역뿐만이 아니라 농인의 한국수어 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2조(정의) 정비

- 현행 용어별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정비하여 법률상 정의와 일치하도록 함.

○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목 변경

- 현행 조례상 조 제목이 ‘수어활성화’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구청장 책무로 되어 있어 조 제목을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함.

○ 안 제6조(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신설

- 구청장은 올바른 한국수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성북구 및 구에 소속

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국수화언어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신설

- 구청장은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 가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지원하는근거를 제도화함.

※「한국수화언어법」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한국수어의 날) 신설

- 한국 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국수화언어법」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목 변경

- 현행 조례상 조 제목이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함.

- 그 밖에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농인 편의 증진),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정비
 - 법령상 정의에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로 되어 현행 조례상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상 용어 반영, 약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정비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한국수화언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성북구 농인 등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2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한국수어의 날,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라. 농인 편의증진(안 제4조)
- 마.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바.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안 제6조)
- 사. 한국수어의 날(안 제7조)
- 아.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자.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 다. 부서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인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성북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한국수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한국수어의 날)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

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성북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3. 정해숙 의원 외 13인 (의안번호 413호)
- 나. 회부일자: 2025. 2.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2.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4조)
-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성북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과, 평화와 인권을 기리는 상징으로 성북구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평화의 소녀상 설치 현황 >

- 시 설 명 : 성북구 한중 평화의 소녀상
- 설치일시 : 2015.10.28
- 설치장소 :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 인근 분수마루

* (현)창작연극지원센터 부지에 최초 설치하였으나 시설건립공사로 2021. 2.28 현 장소로 이전 설치

■ 설치주체 : 성북평화운동위원회

■ 제작의도

-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기억하기 위함
- 한국과 중국 소녀상을 통해 전 세계 전쟁 피해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조례의 목적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안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의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보호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기념사업 수행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성북구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의미가 있고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음.

별첨 1 관계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0호, 2020. 6. 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7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에

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3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태근,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4조)

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보호·관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3. 김육영 의원 외 17인 (의안번호 414호)
- 나. 회부일자: 2025. 2.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2. 19.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자립'의 동행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
(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
(안 제4조~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¹⁾되어(희망시 25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 성북구 자립준비청년 유형별 현황 >

(2024. 12 기준 / 단위 : 명)

계(명)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일시보호 시설	보호치료 시설	종합시설
37	8	5	24	-		

- 2024. 6.27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26.9%), 경제적어려움(23.2%), 취업정보·자격부족(23.2%)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필요한 자립지원의 경우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순으로 실태조사됨.

1)「아동복지법」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아동복지법」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

계	취업 정보, 자격 부족	직장 내 인간 관계의 어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긴급한 도움청할 곳 부족	돈 관리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필요한 돈의 부족	외로움, 심리적 부담	기타
100	17.9	5.8	26.9	3.4	4.1	3.7	7.2	0.8	23.2	6.2	0.8

<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립지원 >

계	경제적 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심리상담 지원	경제교육	사회적 관계 지원	기타
100	68.2	2.5	20.2	0.7	3.4	0.9	1.3	1.2	1.6

- 그간 '21년 7월 정부 관계부처 발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추진 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여전히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구청장은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안 제5조(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자립수당,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 등 지원사업을 명시함.

○ 안 제6조(지원대상)

- 안 제5조 제1호~제2호까지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안 제5조제1호는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 한정하고, 안 제5조제2호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함.

○ 안 제7조(예산의 지원),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그간 보호를 받던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의 보호를 종료하고 이른나이에 사회로 진출하여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북구 관내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됨 없이 타당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지원대상)는, 안 제5조(지원사업)에 규정된 전체 사업대상자가 지원대상임에도 안 제5조제1호, 제2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보니 해당사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한 듯 표현됨. 이에 안 제6조(지원대상)를 명확하게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

현 행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5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리 및 소재시설에서 퇴소한 자에 한하며, 제5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교육 수준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 개선

-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전 조사였던 '2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일반적 특성) '평균 연령'은 22.8세였으며,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 아동양육시설 31%, 공동생활가정 10.3% 순이었다.
- ② (건강)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20년 42.9% → '23년 56.7%로 증가했고,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20년 36.4% → '23년 20.7%로 감소하였다.
- ③ (심리정서) '삶의 만족도'는 '20년 5.3점 → '23년 5.6점(10점)으로 높아졌고,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년 50% → '23년 46.5%로 감소하였다.
- ④ (사회적 관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동네친구 응답(59%)이 가장 높았고, 없다는 응답은 '20년 7.2% → '23년 6.2%로 감소하였다.
- ⑤ (교육) '대학 진학률'은 '20년 62.7% → '23년 69.7%로 상승했고,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다.
- ⑥ (고용·경제) '취업자 비율'은 '20년 42.2% → '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전체의 '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이었다.
- ⑦ (주거) '1인 가구' 비율은 69.5%였고,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주택 응답(45.3%)이 가장 높았다.
- ⑧ (자립지원 서비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진료비 부담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정신건강 전문기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등)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비·생활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전담인력이 심리·주거·취업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 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인 멘토링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월 10만 원의 활동비 신설)

** (국민일보·삼성) 기업인·종교인 등 사회인 멘토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디딤돌가족’ 캠페인('23~)

아울러 주거, 고용·경제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및 전세임대 무상지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확대가 이들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체 청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며 세심하면서도 폭넓게 이들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6조(지원대상)는, 안 제5조(지원사업)에 규정된 전체 사업대상자가 지원대상임에도 안 제5조제1호, 제2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보니 해당 사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한 듯 표현됨. 이에 안 제6조(지원대상)를 명확하게 수정함

나. 수정 내용

현 행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5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리 및 소재시설에서 퇴소한 자에 한하며, 제5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14
----------	--------

제안연월일: 2025년 2월 19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지원대상)는, 안 제5조(지원사업)에 규정된 전체 사업대상자가 지원대상임에도 안 제5조제1호, 제2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보니 해당사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한 듯 표현됨. 이에 안 제6조(지원대상)를 명확하게 수정함.

2. 주요내용

현 행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5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리 및 소재시설에서 퇴소한 자에 한하며, 제5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5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리 및 소재 시설에서 퇴소한 자에 한하며, 제5조제2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p>	<p>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4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자립’의 동행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

(안 제4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아동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 자립수당 지원사업
3.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4.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5.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3. 이용진 의원 외 12인 (의안번호 415호)
- 나. 회부일자: 2025. 2.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2. 2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결과 평가 등 의무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구분 및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구청장의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2014년에 제정된 현 조례에 관련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현재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를 지원하여 성북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상위법 「응급의료법」 제4조~~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

○ 안 제2조(정의) 정비

- 조례상 사용하는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의를 추가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정비

- 구청장은 응급상황 발생시 구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등에 설치 및 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를 재 정비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안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신설

-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안 제5조(응급처치 교육) 신설

- 구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 안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신설

-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에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 안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신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을 법령상 설치대상인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설치권고시설'³⁾로 구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

○ 안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등) 신설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규정을 신설함

○ 안 제9조(응급의료 지원), 안 제10조(홍보), 안 제12조(포상) 신설

-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홍보,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사업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응급 상황에서 성북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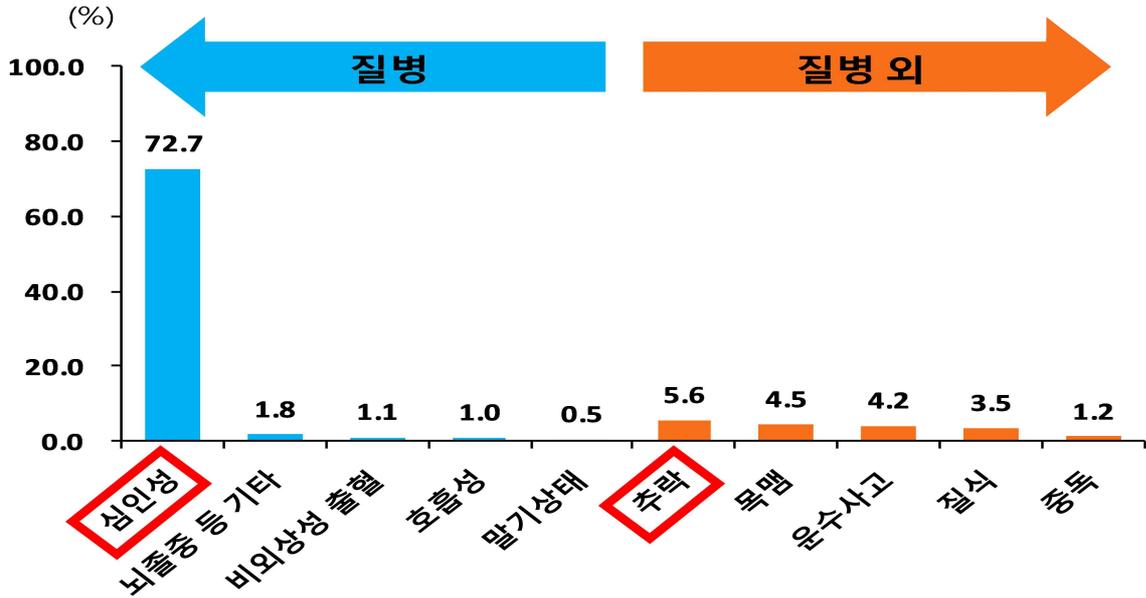
3) 2024년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6p

< 자동심장충격기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 지정에 대한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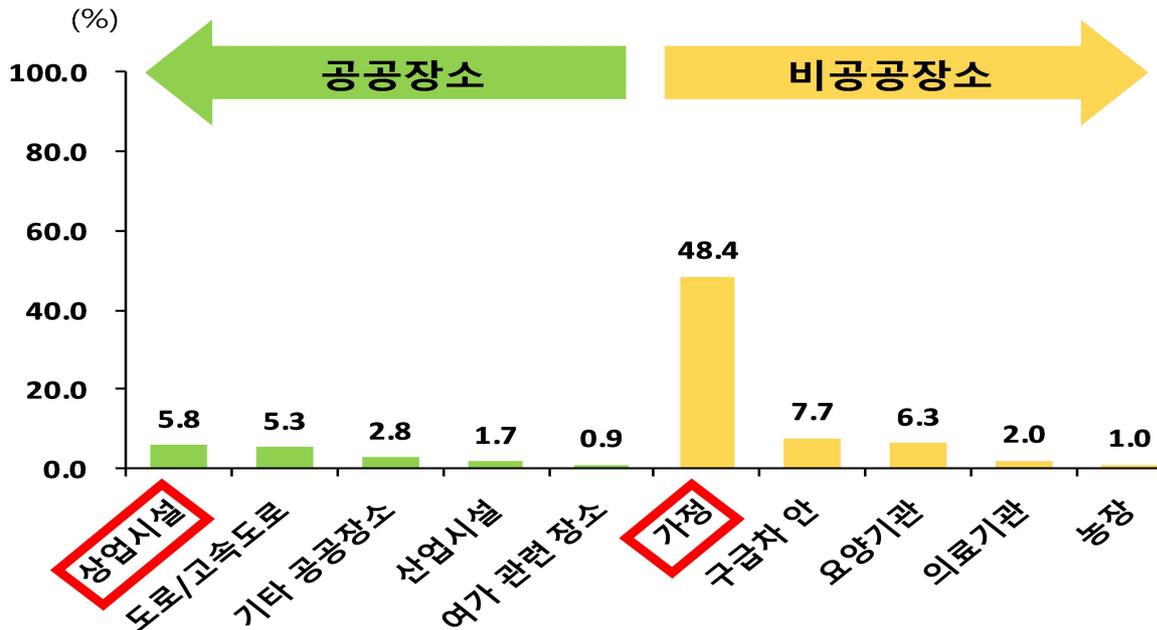
- (내용)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외에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
-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별 조례 제·개정(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등)

- 다만, 질병관리청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이고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의 환자 발생률이 전체의 47%로 가장 많다고 함. 특히 질병이 있는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올바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대상자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림 1]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2023년 상반기)



[그림 2]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장소(2023년 상반기)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5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 의 자 : 고영욱,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1.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결과 평가 등 의무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다.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구분 및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구청장의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의약과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과 같다.

2. 설치권고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장정지 발생위
험이 높은 시설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전산등록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7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2.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04호)
- 나. 회부일자: 2025. 2.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2.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0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m ²)	개관일	비고(현(現) 위탁현황)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화랑로32길 88(석관동)	821.2 (지1층/3층)	2009. 7. 1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위탁기간: 2020.7.1. ~ 2025.6.30)

○위탁기간 : 2025. 7. 1. ~ 2030. 6.30. (5년)

-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30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공개모집)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4)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석관실버복지센터 시설 현황 >

- 위 치 : 화랑로32길 88(석관동)
- 규 모 : 연면적 821.2m², 지하 1층/지상 3층
- 개 관 : 2009.7.1.
- 회원현황 : 총2,195명, 1일 이용인원 220명
- 시설현황 : 사무실, 배움터,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다목적실 등

층	면적(㎡)	주요 용도
지하	49.92	지하편프실, 창고
1층	304.55	배움터, 소그룹실, 두뇌건강증진센터, 스마트커뮤니티센터, 상담실
2층	246.5	다목적홀, 힐링쉼터
3층	220.23	헬스장
옥상	-	옥상 정원

나. 주요내용

- 재위탁 대상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위탁기간이 2025. 6.30자로 만료되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5)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5조6)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15).
-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석관실버복지센터 운영사무는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⁷⁾,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⁸⁾ 및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5년간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석관실버복지센터 운영사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른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은 적정해 보임.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실버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04
----------	-----

제출년월 : 2025. 2.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0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32길 88(석관동)
- 규 모 : 821.2㎡(지1층 / 3층)
- 개관일 : 2009. 7. 1.

나. 위탁기간 : 2025. 7. 1. ~ 2030. 6. 30.(5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마.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실버복지센터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4.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5. 4.
- 협약체결 : 2025. 5.

5. 관계법령 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